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6회 임시회(2021. 1. 2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13
----------	-------

2021. 1. 2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최은하 의원 외 9인
- 나. 제안일 : 2021. 1. 21.
- 다. 회부일 : 2021. 1. 21.

2. 제안이유
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만성질환의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(안 제5조)
- 마. 지원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안 제7조)
- 바.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10조~안 제11조)
- 아.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1. 1. 20.~ 1. 25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의 발생위험이 높은 심·뇌혈관질환, 알레르기질환, 그 밖의 간질환, 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질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2조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암과 더불어 구 보건소에서 관리·시행하고 있는 심·뇌혈관질환, 알레르기질환, 간질환 등으로 규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계획에는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사항,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, 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,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즉, 심뇌혈관질환, 알레르기질환, 만성간질환 등의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·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서,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서 국가위임사무로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사업 실효성 등을 집행기관 관련 실무 부서와 의견 조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음.

<표 1. 마포구 만성질환 추정인구 및 보건소 등록환자>¹⁾

(단위 : 명)

구 분	고혈압	당뇨병	이상지질혈증
평생의사 진단경험률(유병율)	24.8%	9.9%	24.1%
마포구 만성질환 추정인구	63,739	25,444	61,940
보건소 1차진료실 등록 환자	1,926	291	253

※평생의사 진단경험률 : 마포구 30세이상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(%)

1) 2019 지역사회 건강통계(마포구), PHIS

[관 계 법 령]

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